

# 대구예술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

(제정 2011.03.25. 교무위원회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원·심의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사항

**제3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각 처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학생생활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 (임기)**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 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의 2/3이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보칙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